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

2019. 12. 26.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경기인등록규정’ 제22조에 따른 선수 실적발급과 관련하여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 및 대한체육회와 협회 간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란 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경기실적증명서”란 협회장의 명의로 선수가 경기에 참여한 실적(단체종목의 경우 개인기록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경기(동)영상”이란 대회의 경기에 참여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한 실적 자료를 말한다.
4. “경기실적시스템”이란 선수의 경기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발급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회경기영상사이트”란 경기동영상을 등록 및 관리하는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제2장 경기실적 등록

제3조(발급대상)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대회참가)

- ① 선수는 협회의 대회요강에 따라 대회 참가신청을 한 후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② 선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선수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경기실적 등록)

- ① 협회는 국내대회의 경우 대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대한체육회 “경기실적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장에서 심판·감독 등이 경기실적을 확인한 후 기록지에 서명하도록 하고, 경기기록의 원본은 해당 대회로부터 3년간 사무처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대한체육회 “경기실적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실적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선수가 경기실적발급을 신청할 경우 경기실적시스템에서 해당 선수의 실적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가 종료된 후 대회 결과보고서를 접수 및 확인 후 1주 이내에 대한체육회 “경기실적시스템”에 출전 선수의 경기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실적의 온라인 공개 의무)

- ① 협회는 선수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된 경기실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경기실적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경기실적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 ② 체육특기자 입시 등을 위해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실적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체육회가 제공하는 원본검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경기실적 인증처리) 등록된 경기실적에 대해 인증처리를 거쳐 경기실적증명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실적 변경

제8조(변경요청)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한체육회 “경기실적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실적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처리를 할 수 있다.
 1. 선수 본인
 - 가. 본인 경기기록이 누락된 경우
 - 나. 본인 경기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협회
 - 가. 경기기록 등록 시 오류가 포함된 경우
 - 나. 경기기록 등록 후 경기결과가 변경/조정된 경우
- ② 변경 요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경기실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9조(변경처리)

- ① 선수가 신청한 변경요청은 해당 협회에서 접수하여 신청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확인한다.
 1. 신청 내역의 타당성
 2. 필요 증빙자료
- ② 경기실적 변경 요청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체육회로 승인 신청을 한다. 이때 협회는 담당자가 기안하여 상급자가 결재한 변경요청 공문을 협회가 심의 의결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한체육회는 협회가 신청한 변경요청에 대하여 공문, 증빙자료,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각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신청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제10조(발급대상)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대회 참가에 대해 협회의 경기실적 인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대한체육회 주최 및 전국규모 승인대회
2. 다음 각 목의 국제종합경기대회
 - 가. 하계 올림픽대회
 - 나.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 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 라.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
 - 마. 동아시아경기대회
 - 바.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 사. 월드컵게임
 - 아. 세계주니어대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3. 다음 각 목의 종목별 국제경기대회(국제경기연맹, 아시아경기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 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나. 종목별 아시아선수권대회
 - 다. 회원종목단체장이 경기실적을 인정하는 대회
4. 회원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회원종목단체장 명의의 경기실적 발급 대상 대회)
5.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1조(발급신청)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경기실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때 발급을 원하는 선수 본인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선수 자신의 경기실적을 조회한다.
2. 조회된 경기실적 중에서 증명서에 포함할 실적을 선택한다.
3. 조회된 경기실적 중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한다.

제12조(발급비)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각 증명서당 1,000원이 부과된다.

제13조(업무처리 기한) 선수가 신청하는 경기실적 변경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1. 협회 확인 및 대한체육회 승인 요청: 변경 접수 다음날부터 1주 이내
2. 대한체육회 승인: 승인요청 접수 다음날부터 1주 이내

제5장 경기영상 관리

제14조(경기영상 촬영) 협회는 각종 대회의 경기장 내에서 영상을 촬영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공동소유이며, 대회 참가요강에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기영상 관리대상) 경기영상은 다음 각 호들에 해당되는 대회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1.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승인된 전국규모대회
3. 제2호에 해당하고 체육특기자와 관계되어 선수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의 대회

제16조(경기영상 등록) 협회는 대회의 경기영상을 대회경기영상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경기와 출전선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경기영상 보관) 경기영상은 최소 3년의 보관기간을 갖도록 운영한다.

부 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